

당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양육비 선지급도 함께 신청해보세요!

양육비 선지급제

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
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,
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지원합니다.

지원요건

-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(월 20만원, 단 집행권원액 초과 불가) 미만인 경우
-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
- 3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

지원절차



1. 신청



2.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



3. 지급 및 모니터링



4. 반환, 회수

-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- 상담
(1644-6621) | - 제출서류 검토
- 자격요건 적합 여부 확인 | - 선지급금 지급 (매월 25일)
- 양육비 이행, 자격변동 (양육비이행, 성년도래 등) 점검 | - 부정수급 시 반환
- 양육비 채무자 대상 선지급금 회수
* 국제 강제징수 준용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
지원금액

자녀 1인당 월 20만원

지원기간

자녀가 만 18세까지 지원

면접교섭 서비스

• 면접교섭 중재

면접교섭에 관한 중재·합의 지원

• 면접교섭 상담

양육자·비양육자·자녀의 심리상담 및 면접교섭과 관련된 교육

• 면접교섭 모니터링

지속적, 자발적 면접교섭을 위한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독려 지원

• 집단 면접 프로그램

비양육자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(상담·교육·체험활동) 제공

※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서 면접교섭서비스 제공

오시는 길



지하철 이용 시

- 충무로역 3호선·4호선 5번 출구 : 도보 4분
- 명동역 4호선 10번 출구 : 도보 6분



버스 이용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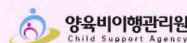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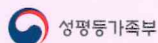
- 퇴계로3가, 한옥마을, 한국의집 정류장 번호: (02151)
- 간선 104, 105, 140, 421, 463, 507, 604, N16(심야) 지선7011
- 퇴계로3가, 한옥마을, 한국의집 정류장 번호: (02152)
- 간선 104, 421, 463, 507, N16(심야) 순환01



양육비 이행은 **의무입니다!**
함께 키우는 책임,
함께 만드는 미래



**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
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
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함께 합니다.**



1644-6621

서울시 중구 퇴계로173
(충무로3가, 남산스퀘어) 24층
www.childsupport.or.kr



양육비이행관리원
Child Support Agency

양육비이행관리원은?

- ▶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성평등가족부 산하 기관입니다.

무엇을 지원하나요?

- ▶ 양육부·모(양육비 채권자)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 관련 상담, 협의성립, 양육비소송, 추심,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- ▶ 안정적,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위하여 주기적인 이행 여부 확인, 이행 독려 및 추가 법적조치를 상담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도 지원합니다.
- ▶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▶ 자녀와 비양육부·모의 면접교섭을 지원하며 비양육부·모-자녀 관계개선,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▶ 양육비 관련 홍보·교육·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하여 '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을 위해 꼭 지급되어야 한다'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.

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절차

1. 양육비 상담·접수



양육비 문제에 대한
전화·온라인·방문상담



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류 제출
(우편·온라인·방문)

면접교섭지원 서비스 및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(※ 자격요건 충족 시)

2.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주소·근무지 조회



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
주소·근무지 파악



양육비 채무자의 소득·재산 파악

3.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



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지원
(인지, 양육자 지정, 양육비 심판청구 등)



이행시 모니터링 지원

불이행시

4. 양육비 추심지원



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및
강제집행 등 법적조치



이행시 모니터링 지원

불이행시

5. 제재조치



양육비 불이행
채무자에 대한
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
신청



이행명령에도 양육비
미지급시 채무자에 대한
운전면허 정지,
출국금지 요청,
명단공개 지원



지속적 모니터링 지원

고질적 양육비 채납 및
감치 미집행 사례 등에
대한 현장지원반 운영

서비스 신청 대상

- ▶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
- ▶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자녀* 양육 한부모·조손가족
* 취학중인 만22세 미만 자녀,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(만22세 미만 + 군 복무기간) 양육 한부모·조손가족
- ※ 이혼 한부모 뿐만 아니라 비혼 한부모도 지원
- 비혼부·모는 인지청구(자녀와 친부·모의 법률상 부모자 관계 형성)부터 지원

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

- 1 온라인 홈페이지(www.childsupport.or.kr) → 정보공간 → 자료실
- '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' 서식 출력
*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서식(작성 예시문) 참고
- 2 양육비 관련 추가 서류
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(www.childsupport.or.kr)
→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→ 이용안내 → 제출서류
- 3 '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' 및 관련서류 필수 제출 (등기우편, 방문)
(우)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173(충무로3가, 남산스퀘어)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

양육비에 관한 상담 방법

- ▶ 전화/방문상담 | ☎1644-6621(1번)
평일 09:00~18:00(주말, 공휴일 제외)
※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로 운영
- ▶ 온라인상담 | www.childsupport.or.kr



※ QR코드를 스캔하시면
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